



보험산업의 그린워싱 이슈와 각국 규제 동향

이승주 연구원

요약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의미하는 ‘그린워싱’은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린워싱은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구축에서 상품관리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세계 각국 감독당국은 금융상품의 구성 및 분류 방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음. 한편 기업이 ESG 관련 활동을 축소하거나 감추는 ‘그린허싱’ 행태도 관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련 규제 정립을 통한 기업의 ESG 이해도 제고를 촉진하는 방안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의미하는 ‘그린워싱’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오도하고 보험회사에는 평판위험 확대를 넘어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¹⁾
 -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워싱은 소비자가 개인의 선호도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오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행은 소비자의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함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위험 확대는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나 손해보험 계약 미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지급여력비율, 더 나아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험산업 내 그린워싱은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구축에서 보험 상품 판매 및 사후 관리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 EIOPA는 사업 모형 및 관리, 상품설계, 판매, 관리 등 가치사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소개함
 - (사업모형 구축)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신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선언한 한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거나 이를 개발하는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행위
 - (사업관리) ESG 레이블을 부여받은 펀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ESG 투자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나 자연재해가 보험회사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ESG 리더’ 등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 (상품설계) 다중옵션상품(Multi-Option Products)에서 하나의 상품만이 ESG를 표방하나 상품 전체가 ESG를 표방한다고 공시하는 행위
 - (상품판매) 정확한 공시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에 대한 언급 없이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단어를 앞세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판매 과정에서 SFDR 8조 펀드를 9조 펀드로 착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상품관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해당 상품을 SFDR 9조 펀드로 분류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 이후 이를 8조 펀드로 강등 및 재분류하는 행위²⁾

1) EIOPA(2023), “Advice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Greenwashing - progress report”

○ 이에 세계 각국의 감독당국은 금융상품의 구성 및 분류 방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있음

- 유럽은 2019년부터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분류 및 공시를 골자로 하는 SFDR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미국 및 영국 또한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상품의 포트폴리오 최소 비율을 규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함
 - FCA가 도입한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SDR)은 반그린워싱규칙, 투자상품 레이블 제도, 네이밍 및 마케팅 요
구사항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하며 각 제도의 시행일은 2024년 5월, 7월, 12월임³⁾

〈표 1〉 세계 각국 감독당국의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규제 방안

주체	규제	주요 내용	시행 시기
ESA (유럽)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SFDR)	금융상품을 제6조(지속가능성X), 제8조(라이트그린), 제9조(다크그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21(Lv.1) '23(Lv.2)
SEC (미국)	투자회사법 35d-1 (Name Rule, 개정)	펀드 상품명에 기재된 특정 투자항목(성장, 가치, 지속가능성,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에 이에 부합하는 자산이 80% 이상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등에 공시해야 함	'23. 12
FCA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 (SDR) 중 상품 레이블 제도	지속가능성 관련 4가지 펀드 레이블(영향, 초점, 개발자, 혼합목표)로 분류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산 비율은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30% 자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24. 7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 한편 그린워싱 낙인이 두려워 ESG와 관련된 활동을 감추는 ‘그린허싱(Greenhushing)’ 행태도 관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련 규제 정립을 통한 기업의 ESG 이해도 제고를 촉진하는 방안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 그린허싱은 기업이 그린워싱 리스크(평판, 법률 등)에 대한 우려로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과소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ESG 활동의 다양성 및 투명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
 - 참조기간을 거친 SFDR이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로 약 1,930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제9조 펀드에서 제8조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⁴⁾
- ‘지속가능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하는 그린허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 규제의 정립을 통한 기업의 ESG 이해도 제고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 EU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상품에 환경 레이블을 부여하는 녹색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 후속 규제를 마련하여 판매 상품에 부여된 지속가능성 특성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⁵⁾

2) SFDR 9조에 해당하는 상품은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8조는 환경 및 사회적 요인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 상품 그리고 6조 펀드는 8조 및 9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의미함

3) FCA(2023. 11), “PS23/16: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SDR) and investment labels”

4) Reuters(2023. 4), “EU moves to clarify 'sustainable' investments after fund downgrades”

5) European Parliament(2023.10) “Green claims' directive Protecting consumers from greenwashing”